# 지속가능경영위원회규정

**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**

## 제 1 장 총 칙

**제 1 조(목적)**

이 규정은 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적용범위)**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 3 조(권한)**

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•의결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, 기타 일상 경영사항을 심의•의결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구 성

**제 4 조(구성)**

① 위원회 위원(이하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인 이사의 이사 직 잔여 임기로 한다.

④ 경영위원회의 명칭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롤 하기로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 5 조(위원장)**

① 위원회는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**제 6 조(종류)**

회의는 매분기 1 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결의사항이 없을 경우, 생략

가능하다.

**제 7 조(소집권자)**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 8 조(소집절차)**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**제 9 조(결의방법)**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•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

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 10 조(부의사항)**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제 3 조 1 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.

①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

-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
- 사업계획, 사업구조조정 추진
-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
- 급여, 근무제도 및 복리후생 변경에 관한 사항
- 기술 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
- 연간 및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
- 중요설비 교체계획 및 신 증설 계획
- 지점, 공장,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
- 해외지사, 현지법인 등의 설치 이전 및 철수
- 기타 중요 경영 현안

② 재무 등에 관한 사항

- 자기자본 2.5% 미만의 타법인(관계사) 출자, 증자, 출자지분 처분. 단 100 억원(외화채권의 경우 USD 10Mil) 이하 건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결의를 생략하고

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
- 자기자본 5% 미만의 시설투자, 단기차입금증감

- 자기자본 2.5% 미만의 채무(지급)보증의 건. 단 100 억원 (외화채권의 경우 USD 10Mil) 이하 건, 또는 기간연장 건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결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
- 자산총액 5% 미만의 유형자산취득, 처분

- 내부거래의 승인(특수관계자와의 거래)

- 해외법인 Subordination Agreement (연장)승인

- 여신 신규약정 / 한도 증액,연장 / 한도 내 과목한도 변경. 단, 100 억원 (외화채권의 경우 USD 10Mil) 이하 건, 또는 기간연장 건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결의를 생략하고 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
-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

-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 /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③ 경영 전반에 걸친 Risk 관리에 대한 사항

- Risk 관리 운영 실태

- 의사결정을 요하는 Risk 현안

④ 기타 위원장/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관련법 및 규정 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.

**제 11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**

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 12 조(의사록)**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위원회 결의 내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13 조(통지의무)**

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5 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 14 조(이사회와의 관계)**

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내에 이사회의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②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

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.

## 제 4 장 보 칙

**제 15 조(간사)**

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

② 간사는 재무회계 담당임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
**제 16 조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